

0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 과제 검토

김주연 김주연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중재위원 결격사유 제외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국회가 2020년 5월 29일로 종료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총 12건이었는데, 이 중 중재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한 개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737)만 의결되었고, 나머지 11건은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당의 당원,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등에 대해서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언론중재법 제8조). 그런데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인’을 정의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가 있었다. ‘언론인’을 사회 통념에 따라 취재, 보도와 관련된 기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으로 한정지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근무하기만 하면 ‘언론인’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인’을 취재, 보도와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기사나 뉴스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언론사에 근무하는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사의 일반 임직원도 해당 언론사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직 언론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의 결격 사유에 있어서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실질적으로 적었다. 이에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에서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언론중재위원의 결격 사유가 개정되었다.

사실 위 개정 내용 이외에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구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열람차단청구권(또는 침해배제청구권),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정보의 수정·보완청구권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위 내용들은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관련 개정 논의는 모두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의 몫이 되었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문제를 검토하고, 장기적 쟁점으로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문제도 정리해보기로 한다.

2. 인터넷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구제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인터넷 미디어 환경 변화

인터넷이 정보 유통의 주된 창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언론 보도의 전파 모습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된 경로가 지면, 방송이던 시절에는 한 번 생성된 보도가 다시 쓰일 일은 거의 적었다. 그러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구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기존 구제수단만으로 피해 회복이 힘들어졌다. 인터넷의 ‘잊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거대한 인터넷 망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검색어가 입력되면 관련 기사를 즉시 내보낸다. 그런 식으로 기사는 계속해서 검색되고 소비된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해당 기사를 소극적으로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SNS·블로그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시키기도 하며 댓글을 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기사가 야기하는 침해의 수위와 양태가 예전과 동일할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들다. 보도의 전파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하고, 또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언론의 자유 보장은 대원칙이지만,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누군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0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러한 배경에 기반한다.

나 침해배제청구권(수정·보완·삭제 등) 및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 등을 포함한 침해배제청구권은 광상도 의원이 2016년 10월 28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989)에 있던 내용이었으며, 열



람차단청구권은 신동근 의원이 2019년 5월 21일 발의한 동법 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0521)의 내용이었다. 이 장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두 청구권과 관련한 개정안 내용을 정리한다.

(1) 판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삭제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위 판례가 입법 시도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피고 언론사는 ‘원고가 미국의 정보원으로서 국내 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유출하였다’는 내용을 총 57회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1심, 2심 재판부가 기사 49건에 대해 삭제를 명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대법원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으며 또한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법리, 즉 물권을 가진 자는 그에 관해 방해 상태를 야기, 지배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현재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다.

(2) 침해배제청구권 개정안(2016. 10. 28.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89)

개 정 안

제33조(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 ②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관련 언론사등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의 조정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인격권피해자 등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본 판결 내용을 반영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재위, 기사 원본 수정, 삭제는 언론자유침해”(인터넷 중앙일보, 2016, 12, 7),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사 1년 내내 기사삭제 요청 시달릴 것”(한국기자협회, 2015, 10, 21) 등과 같은 당시 기사를 보면, 언론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었다. 2016년 12월 6일에는 광상도 의원실과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주최로 위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문소영 당시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이 정부 등 권력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언론보도는 역사적 기록물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개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삭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의 자유 침해이고,¹⁾ 오보도 보도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보다는 오보를 알리는 표시를 통해 해결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정정 및 반론보도의 경우 그 청구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인데 반하여,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은 그 청구기간을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한 것도, ‘안 날’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결국 주장자의 주장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1) 2016년 12월 6일 토론회에서 당시 권오근 운영본부장(현 사무총장)은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를 구하는 권리는 언론사의 보도사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언론사 DB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세이프타임즈, 2016, 12, 8). 다만, 당시의 개정안 법률 문구나 판례가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삭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원본 삭제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뒤에서 살필 열람차단청구권 관련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과 중복되므로 후술하기로 한다. 다만 청구기간과 관련한 찬성 견해를 소개하면, 기사삭제청구권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하는데, 인격권은 주체가 생존하고 있는 한 시효로 소멸할 수 없는 권리여서, 오히려 법으로 기간을 제한해 침해배제청구권이 무제한 청구되어 언론의 부담이 증가하는 우려를 막았다고 반박하였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 22일, 2017년 11월 21일, 2018년 3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만 되었다가, 결국 임기만료폐기되었다.

(3) 열람차단청구권 개정안(2019. 5. 21.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521)
한편, 신동근 의원은 2019년 5월 21일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 정 안

제2조(정의)

17조의2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 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밖에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②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기사삭제 등을 포함한 침해배제청구권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한 개정안으로 보인다. ‘열람차단’의 정의는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 관리하는 것’으로 기사삭제가 아니라 기사열람차단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논란이 된 내부 데이터베이스 삭제 의무를 언론사가 지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²⁾ 또한 청구기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정보도 등 청구와 동일하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다.³⁾

이에 대하여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의견은, 권리침해적 보도의 지속적이고 현저한 노출에 따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열람차단청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고, 조정 실무상으로는 열람차단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개정안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의 인격권은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민법 등 현행법을 통해 보호 가능하며, 보도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하더라도 개정안의 청구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단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사 내용에 이력을 덧붙이는 형태로,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여야 하는데, 기사 자체의 삭제, 차단은 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이 피해구제의 범위를 ‘언론보도가 ①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③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람차단청구를 ‘언론보도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2) 참고로 현재 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시대로 ‘기사삭제’로 청구, 선고되는 것으로 보이고, 언론중재위원회 실무는 ‘기사삭제가 아니라 ‘기사열람·검색차단’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참고로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현재의 청구 기한이 너무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강효상 의원, 한선교 의원이 청구 기한을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언론보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추후보도의 경우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 발의하기도 하였다.

열람차단청구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의견도 물론 속속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나, 기사삭제를 명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중재위 조정 실무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인터넷 매체 조정사건 중 약 30.6%에 해당하는 사건이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제는 마냥 피해구제 방안의 입법화를 늦추기보다는,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표 1〉 최근 5년간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중 기사열람·검색차단을 통한 피해구제 현황

연도	전체 청구 건수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A)	기사열람·검색차단으로 구제된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B)	(B)/(A)(%)
2016	3,170	2,156	1,584	416	26.3
2017	3,230	2,464	1,734	614	35.4
2018	3,562	2,756	1,963	622	31.7
2019	3,544	2,630	1,666	509	30.6
2020. 5. 말	1,505	1,132	593	147	24.8
계	15,011	11,138	7,540	2,308	30.6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한편 보도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실한데도, 청구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단청구가 가능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과 더불어 기사의 수정청구권을 명문화하는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보도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기재된 경우, 보도 자체는 그대로 두되 당사자와 관련된 특정 요소만 삭제하는 쪽으로 기사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 초상권 등이 침해된 보도 사진이 게재된 경우에, 사진만 내리도록 기사가 수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광상도 의원 개정안에는 기사 수정·보완 청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동근 의원 개정안에서 제안된 열람차단청구권에는 기사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 내용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기사열람차단청구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는 피해구제 범위에서 제외하지는 견해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은 무엇보다 이용자에게 열람을 차단시키고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진실하지 아니한 전파의 경우는 정정보도나 후속보



도를 통해 바로 잡을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나, 공익성도 없고 위법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보도의 경우에는 열람차단을 통한 구제 외에 다른 구제는 부차적이다. 이전의 지면, 방송 보도 형태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지 않았으나,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당사자는 계속해서 후속 피해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기관과 공인의 해당 권리 남용을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5조의 내용(임시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등)를 참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인 관련 보도에 적용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도 좋을 듯하다.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자칫 공인의 사생활처럼 보이는 보도도 공인의 도덕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보도가 열람차단청구권 등으로 제한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입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절차 성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기관이다. 일방향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아니므로, 언론사가 당사자의 열람차단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합의)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외부에서 염려하는 정도의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㉔ 추후 변경에 따른 기사수정·보완청구권
(2016. 10. 28. 광상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989)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현미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제품명과 제조회사 명칭을 각 공개한 보도와 관련한 조정신청 사건이 있었다(2019서울조정1704·1705·1706·1707·1708(병합) 각 추후청구). 신청인 업체는 법원 재판 결과 위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정돼 행정명령이 취소됐으므로 취소 처분에 관한 사실이 보도돼야 한다며 5개 언론사에 대하여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각하하면서,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의 요건은 ‘청구권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인 업체는 행정처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형사절차상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요건을 미비한 청구”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형사절차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기속력 있는 판결 등으로 과거 보도내용과 다른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새로운 보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입법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광상도 의원 발의안에는 ‘추후 변경에 따른 기사의 수정·보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한다.

개 정 안

제33조(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 ②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관련 언론사등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추후보도청구권 조항(언론중재법 제17조)을 수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기존 조항에, 행정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가령, ‘행정 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행정처분이 무효·취소, 심판·판결 등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할 때는 대서특필하였다가도,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질 때는 작게 보도하거나 심지어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라)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 신설 제안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기사삭제청구권 또는 열람차단청구권)과 비교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잊힐 권리’가 있다. 잊힐 권리는 ‘옛날’ 글이나 사진이 인터넷 시대에 너무 쉽게 검색이 되면서 생겨나게 된 권리로, 주로 적법하게 제공된 정보와 관련하여 논의된다는 점에서, 위법한 기사에 대하여 논의되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는 곤잘레스와 구글 간의 소송이다. 곤잘레스는 1998년에 채무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신문 광고가 2009년까지도 구글에서 검색이 되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AEPD)를 통해 원 언론사인 신문사와 구글에 기사삭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AEPD는 신문사에 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청구를 거부하고, 구글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에서 해당 기사 링크가 노출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였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구글에 대해 검색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잊힐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판결이었다. 또한 ‘원기사 삭제 문제’와 ‘검색결과목록 링크 삭제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근무하던 당시, 잊힐 권리와 관련한 상담이 종종 있었다. 하나만 소개하면, 상담자는 어린 시절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 당시 언론사는 상담자의 동의를 받고 장학금 수여 사진을 게재했다. 성인이 된 상담자는 친구들이 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알게 될까봐, 포털에서 해당 기사(혹은 보도사진이라도) 검색이 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보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당사자가 사람들로부터 ‘잊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위 건은 해결이 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잊힐 권리가 논의되고 있지만, 양 법률 모두 언론사 취재물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⁴⁾ 언론 보도의 경우 다른 종류 게시물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더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언론 기사에 대한 ‘잊힐 권리’ 논의는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다.⁵⁾ 하지만 공인이 아닌 사인의, 공적 사인이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오래된 기사라면, 구제 방법이 있는 편이 좋다고 본다.

더불어 위 구글 판례를 통하여, ‘기사의 보존과 접근성을 분리’⁶⁾하는 방안 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대응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1) 기사를 아예 삭제하는 형식, 2)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존하고, 이용자의 열람만 차단하는 형식(원언론사에서 열람차단 조치를 취하면, 포털·구글 등 검색엔진에 위 조치 결과가 반영된다), 3) 원언론사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포털 등에서만 검색이 되지 않도록 검색링크만 삭제하는 형식이 있을 수 있다. 3), 2), 1)의 순으로 언론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된다. 따라서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 방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

4)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사가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제58조 제1항 제4호), 정보통신망법 및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정보 주체가 직접 올린 게시물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44조2), 언론 보도는 임시조치 대상이 아니다.

5) 구글이 2015년 3월까지 접수한 전체 요청의 95.6%가 언론기사의 삭제 요청이 아니라, 개인정보들에 대한 링크 삭제 요청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김민정 (2015). ‘검색결과목록 링크삭제청구권’으로서의 잊힐 권리의 적용기준에 대한 해의 동향. <언론중재>, 통권136호, p.120), 언론보도에 대한 잊힐 권리 주장은 쉽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구제 방안을 가장 광범위하게 다룬 광상도 의원 개정안에도 당사자의 ‘잊힐 권리’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구분권 (2016. 7. 25).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언론, 인터넷에 까칠 영향. 한국언론진흥재단 <다독다독>. URL: <https://brunch.co.kr/@kpf10/201>

면서도,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포털 사업자의 영업(표현)의 자유 문제, 포털 사업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의 문제, 국내 포털과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간의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및 언론중재법 적용 문제는 마지막에 다루기로 한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⁷⁾

현행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설치 및 운영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비상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만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시정 요구 주체에서 빠져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상설로 설치·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당도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2019. 5. 31.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761)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 과제를 짚어보는 차원에서, 위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던 입법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상설화 개정이 논의된 이유는, 비상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선, 국선,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각각 다르고, 통상 1년에 한 번씩 치러야 하는 재보궐선거까지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빈번하게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간 심의위원 중복 위촉 문제, 심의 경험이 단절됨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책임감 부재 문제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당도 선거기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은 선거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이고, 실제로 불공정선거보도 중에 정당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는 데다가, 지난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는 위성정당까지 등장한 사실을 봐도, 시정 요구 주체에 정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7) 이 장의 내용은 안명규 (2020), 선거보도심의제도 운영의 실제와 입법, 정책적 제언. <언론중재>, 통권154호, pp.54-57를 참조 및 요약하였다.



4.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문제⁸⁾

국내 포털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고 있다.

〈표 2〉 연도별 국내 뉴스 유통플랫폼 대상 언론조정 건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조정 건수	181	841	510	454	369	4171	799	330	416	421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그렇다면,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아 조정 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역시 언론의 기사를 제공, 매개한다는 점에서 국내 포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구글을 상대로 한 언론중재 및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각 중재부는 (구글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갈음결정을 내리기도 했고(2010서울조정29·30), 비교적 최근에는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2017서울조정1003·1004). 다만 이 기각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는 기사 매개가 안 되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견해이

8) 이 장의 내용은 ‘박아란·양재규·오현경 (2019), <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 뉴스>,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용을 요약 및 인용하였다. 특히 법률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논문 pp.85-88.를 인용하였다.

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기사의 매개 또는 제공을 전제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니므로, 언론중재법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기각 결정에 대한 다른 견해는, 단지 기사제공 언론사와 신청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이 났을 뿐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언론중재·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는 의견으로, 만일 언론중재·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각하 결정이 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박아란·양재규·오현경, 2019).

다만 오늘날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국내외 유통플랫폼의 매개 또는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더구나 문제 보도가 국내외 유통플랫폼의 '뉴스게시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보도가 있었던 해당 자리에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시되어야 '무기대등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에도 차등 없이 언론중재법 적용이 가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이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에 적용되기 위하여 풀어야 할 입법적인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선행적인 검토로서 '불법행위의 피해가 발생한 곳'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법인의 국내법 적용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 언론중재법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피신청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법률이라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송달, 집행, 관할 등 실무적인 내용의 규정을 손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미디어플랫폼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국내대리인제도'⁹⁾를 도입하여 송달이나 집행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제도가 없다면, 해외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사실상 송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9)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명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령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조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 기사를 매개 등을 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의 ‘본사’는 우리나라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 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1조의2에 ‘다만 법 제2조제18호 본문에 해당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조정중재규칙상 ‘관할’에 대한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언론조정중재규칙에서는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글로벌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청 사건의 관할을 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5. 나가며

최근 인터넷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지금의 언론중재법은 전통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체계와 구제수단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급증하는 권리침해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가 힘들다. 이에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수정·보완청구권 등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언론분쟁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중재위원 증원을 통한 중재부 증설¹⁰⁾도 필요하다. 현재 중재부만으로는 법정처리기한(14일)을 준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재부 증설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며, 중재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언론분쟁당사자들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도 중재부를 신설해 지역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위한 법적인 대비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자는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이자, 민사적 구제제도인 언론중재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10) 이와 유사한 입법 취지에서 20대 국회에서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2019. 10. 31. 김영주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502)이 발의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언론중재법상 중재위원 정원인 90명을 모두 채워 18개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자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중재위원 증원’ 관련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0. 6. 23. 의안번호 2100874).